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29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 : 윤후덕 · 염태영 · 임오경

김정호 · 홍기원 · 이병진

박 정・전진숙・박민규

정준호 • 박수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석에 대하여 일부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여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일부 피고인들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석을 허가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76-3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병원

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이 피고인 관련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방비하며 관련 규정조차 임의규정 형식이라 의무사항이 아님.

이에 법으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로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구속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제2항제6호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6조의2(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 ① 법원은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 하여 보석을 허가한 경우에는 반기 1회 이상 그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이하 이 조에서 "건강상태등"이라 한다)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강상태등을 법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 사유에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한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6조의2에 따른 조회 또는 조사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이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전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 및 건강상 이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96조의2(보석허가결정 후의 조 치) ① 법원은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한 경우에는 반기 1회 이상 그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이하이 조에서 "건강상태등"이라한다)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경우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강상태등을 법원에 주기적으로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경우로서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 사유에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보석을 허가한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반기 1회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 (생 략) ②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 5. (생 략)
<신 설>

	_
	_
	_
·	
	_
.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96조의2에 따른 조회 또는
 조사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
 행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
 분한 이유가 있는 때
- ③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